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284

발의연월일: 2021. 8. 27.

발 의 자: 송언석・권명호・金炳旭

김영식 · 김정재 · 박덕흠

양금희 · 임이자 · 정희용

최형두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법인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르면 접대비는 접대, 교제, 사례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임.

그런데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키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'접대비'를 '기업활동촉진비'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72조 및 제136조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2285호), 「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 12288호), 「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28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"접대비"를 각각 "기업활동촉진비"로 한다.

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접대비"를 각각 "기업활동촉진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접대비 (이하 이 항에서 "문화접대비"라 한다)"를 "기업활동촉진비"로, "접대비"를 각각 "기업활동촉진비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접대비"를 각각 "기업활동촉진비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	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
세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	세 과세특례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	
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	
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	
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	
인세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	
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	
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	
익[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	
한 당기순이익(當期純利益)을	
말한다]에 「법인세법」 제24	
조에 따른 기부금(해당 법인의	
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	
한다)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	
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	
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<u>접</u>	기업활동
대비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	<u>촉진비</u>
관련된 것만 해당한다)의 손금	
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	
액에 100분의 9[해당금액이 20	
억원(2016년 12월 31일 이전에	

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하 이 조에서 "당기순 이익과세"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 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.

- 1. ~ 8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- ⑥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6조(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 저 례)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<u>접</u> 대비로서 「법인세법」 제25조 제4항 및 「소득세법」 제35조

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6
<u>기업활동촉진비</u>
세136조(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
례) ① <u>기</u>
업활동촉진비

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 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 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 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으로 한다.

#### 1. • 2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### 1. ~ 3. (생 략)

③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(이하이 항에서 "문화접대비"라 한다)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[「법인세법」 제25 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

기업활동촉
진비
,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
<u>기업활동촉진비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
<u>기업활동촉진</u>
<u>荆</u>
기업활동촉진비

금액(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)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.

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「법인세법」제25조제4항 및 「소득세법」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수입금액별 한도는 「법인세법」제25조제4항제2호의 표및 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산출한다.

<u>기업활동</u>
<u>촉진비</u>
<u>.</u>
4
<u>기업활동촉진비</u>
<u>기업활</u>
<u> 동촉진비</u>